|  |  |  |
| --- | --- | --- |
| **국가세무총국의 영업세를 증치세로 개정·징수하는 시범시행기간의 유관 증치세문제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공고 2015년 제90호  정책집행을 통일시키고자, 영업세를 증치세로 개정·징수하는 시범시행기간의 유관 증치세 문제에 관한 공고는 다음과 같다.  1. 벌집모양의 디지털 이동통신용 탑(간), <고정자산분류 및 코드>(GB/T 14885-1994)중 "기타통신설비"(코드699)에 속하는 그 증치세의 매입세액은 현행규정에 따라 매출세액 중 공제할 수 있다.  2. 납세자는 본인이 사용한 고정자산을 판매할 경우, 간소화 방법을 적용하여 3%의 징수율을 2%로 감소한 증치세 징수정책을 따를 경우에는 감면세액을 포기할 수 있다. 간소화 방법으로 3%의 징수율에 따라 증치세를 납부할 경우에는 증치세 전용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3. 납세자가 유형동산 융자성 판매 후 리스백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당기 판매액 계산 시, 공제한 유형동산 원금을 서면계약서에 약정한 당기 수취한 원금으로 할 수 있다.  서면계약서가 없거나 서면계약서에 약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기 실제 수취한 원금으로 한다.  4. 유형동산 융자임대서비스를 제공한 납세자는 팩토링[[1]](#footnote-1) 방식으로 융자대출계약서에 따른 기간이 도달하지 않은 미수임대료의 채권을 은행 등 금융기관에 양도하고, 그와 임차인 간의 융자임대관계를 변경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현행규정에 따라 증치세를 납부하고,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5. 납세자는 벌집모양의 디지털 이동통신용 탑(간) 및 관련설비를 통해 전신기업에게 제공하는 기지국안테나, 전송선 및 설비환경제어, 이동 모니터링, 피뢰소방, 운행유지 등 탑류 기지국 관리업무는 "정보기술 기초설비 관리서비스"에 따라 증치세를 납부한다.  납세자는 빌딩, 터널 등 실내통신 분포시스템을 통해, 전신기업에 제공하는 음성통화 및 이동인터넷 등 무선신호 실내 분포시스템 전송서비스는 기초전신서비스 및 부가가치 전신서비스에 따라 각각 증치세를 납부한다.  본 공고는 2016년 2월1일부터 시행하며, 이전에 처리되지 않은 사항은 본 공고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특별히 공고한다.  국가세무총국  2015년 12월 22일 |  | **国家税务总局**  **关于营业税改征增值税试点期间有关增值税问题的公告**  国家税务总局公告2015年第90号  　 为统一政策执行口径，现将营业税改征增值税试点期间有关增值税问题公告如下：  　一、蜂窝数字移动通信用塔（杆），属于《固定资产分类与代码》（GB/T 14885-1994）中的“其他通讯设备”（代码699），其增值税进项税额可以按照现行规定从销项税额中抵扣。  　二、纳税人销售自己使用过的固定资产，适用简易办法依照3%征收率减按2%征收增值税政策的，可以放弃减税，按照简易办法依照3%征收率缴纳增值税，并可以开具增值税专用发票。  　三、纳税人提供有形动产融资性售后回租服务，计算当期销售额时可以扣除的有形动产价款本金，为书面合同约定的当期应当收取的本金。无书面合同或者书面合同没有约定的，为当期实际收取的本金。  　四、提供有形动产融资租赁服务的纳税人，以保理方式将融资租赁合同项下未到期应收租金的债权转让给银行等金融机构，不改变其与承租方之间的融资租赁关系，应继续按照现行规定缴纳增值税，并向承租方开具发票。  　五、纳税人通过蜂窝数字移动通信用塔（杆）及配套设施，为电信企业提供的基站天线、馈线及设备环境控制、动环监控、防雷消防、运行维护等塔类站址管理业务，按照“信息技术基础设施管理服务”缴纳增值税。  　纳税人通过楼宇、隧道等室内通信分布系统，为电信企业提供的语音通话和移动互联网等无线信号室分系统传输服务，分别按照基础电信服务和增值电信服务缴纳增值税。  　本公告自2016年2月1日起施行，此前未处理的事项，按本公告规定执行。  　特此公告。  国家税务总局  2015年 12月 22日 |

1. 팩토링: 금융기관들이 기업으로부터 상업어음·외상매출증서 등 매출채권을 매입, 이를 바탕으로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 [↑](#footnote-ref-1)